

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93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2.

발 의 자 : 박정현 · 김재원 · 이연희
김현정 · 박홍배 · 김기표
서미화 · 고민정 · 천준호
김남근 · 이주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타인의 생명·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감면해 주고 있으며, 그 범죄 유형으로 가정폭력범죄, 아동학대범죄를 규정하고 있음.

매해 스토킹범죄가 증가하며 위험성이 커지는 한편,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명·고수하기 어려워, 피해자 처벌불원 시에도 적극적으로 보호·제재 및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있음.

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경찰관이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번함.

실제로 전 연인 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으나,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및 긴급응급조치 취소를 요청하며 감사관실 민원 및 수사관

상대 진정서를 접수한 사례가 있음.

이에 본 법률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여, 경찰관이 스토킹행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있어, 책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(안 제11조의5 제2호).

법률 제 호

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5제2호 중 “따른 아동학대범죄”를 “따른 아동학대범죄,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스톱킹범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에 <u>따른 아동학대범죄</u>	-- <u>따른 아동학대범죄, 「스토</u> <u>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</u> <u>률」에 따른 스토키범죄</u>
--------------------	---